工業所有權審判事例

實用新案 拒絕不服

〈大法院 第3部 判決〉(1988. 12. 6)

事件番號 : 86후 146
裁 判 長 : 박 우 동
關與法官 : 이 재 성 · 윤 영 철
1. 出 願 人(上告人) : (주) 쌍방울
2. 相 對 方(被上告人) : 특허청장
3. 原 審 決 : 特許廳 抗告審判所 1986. 8. 30字 1984年 抗告審判(絕) 第296號
4. 主 文 : 上告를 기각한다. 上告費用은 出願人의 부담으로 한다.
5. 理 由 : 上告理由를 본다.

實用新案法 第5條 第2項은 實用新案登錄出願前에 그 考案이 속하는 기분술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第1項 각호에 게기한 考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考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考案은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同條 第1項 第1號는 實用新案登錄出願前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이 실시된 考案을 들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원 考案은 내외측 직모사이에 보온층을 개삽한 3중편직물에 있어서 내측용 방적사가 장섬유를 일정간격마다 결속하여 이루어지는 결속부위를 외측용 방적사에 형성되는 루우프와 상호표리 연결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보온성 3중편직물에 관한 것인데, 이 考案내용은 이 사건 考案出願前에 공지된 것이고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實用新案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 알 림 ⊙ **零細發明人을 돕습니다**

大韓辨理士會에서는 극빈자가 發明·考案을 하여 이를 出願하고자 할 때 당회소속 辨理士가 무보수로 受任하여 모든 節次를 수행해드리고 있읍니다.

극빈자 發明人 여러분께서는 大韓辨理士會를 많이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①邑·面·洞長이 發行하는 영세생활보호대상자 증명 2통
②發明 考案의 要旨說明書 2통(도면 포함)

※ 자세한 사항은 大韓辨理士會(552—0882~5)로 問議바랍니다